



# 고속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매뉴얼



경 찰 청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                      |    |
|----------------------|----|
| <b>제1장 서론</b>        | 5  |
| 1. 목    적            | 5  |
| 2. 관련 근거             | 5  |
| 3. 적용 범위             | 7  |
| 4. 협의 순서             | 7  |
| <b>제2장 주요내용</b>      | 8  |
| 1. 교량 구간             | 8  |
| 2. 터널 구간             | 10 |
| 3. 본선 진입 구간          | 12 |
| 4. 본선 진출 구간          | 16 |
| 5. 본선 곡선 구간          | 17 |
| 6. 톨게이트 구간           | 18 |
| 6.1 본선 톨게이트 진입 전     | 18 |
| 6.2 요금소 구간           | 20 |
| 6.3 국도에서 IC로 진입 시    | 22 |
| 7. 휴게소 구간            | 24 |
| 8. 졸음쉼터 구간           | 26 |
| <b>제3장 부록</b>        | 28 |
| 1. 교통안전표지 점검 목록표(양식) | 29 |





## － 표 목 차 －

|                              |    |
|------------------------------|----|
| 〈표 1〉 설계속도에 따른 곡선반경 기준 ..... | 9  |
| 〈표 2〉 굽은도로 주의표지 설치 기준 .....  | 17 |



## － 그 림 목 차 －

|                               |    |
|-------------------------------|----|
| [그림 1] 교량 구간 .....            | 9  |
| [그림 2] 교량 및 터널 구간 .....       | 10 |
| [그림 3] 터널 구간 .....            | 11 |
| [그림 4] 터널 및 교량 구간 .....       | 12 |
| [그림 5] 터널 내부 .....            | 12 |
| [그림 6] 차로변경 표시 세부 설치 방법 ..... | 13 |
| [그림 7] 본선 진입 전 .....          | 15 |
| [그림 8] 본선 진입 시 .....          | 15 |
| [그림 9] 본선 진입 후 .....          | 15 |
| [그림 10] 본선에서 진출 시 .....       | 17 |
| [그림 11] 본선 곡선구간 .....         | 18 |
| [그림 12] 본선에서 톨게이트 진입 시 .....  | 19 |
| [그림 13] 차로 유형별 설치 예시 .....    | 21 |
| [그림 14] 요금소 구간 .....          | 21 |
| [그림 15] 국도에서 IC 진입시 .....     | 23 |
| [그림 16] 휴게소 구간 .....          | 25 |
| [그림 17] 졸음쉼터 구간 .....         | 27 |



## 제 1 장 서 론

### 1. 목 적

- 본 매뉴얼은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고속도로(고속국도) 구간에 적용할 표준 설치 매뉴얼로써,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설치방안을 도출하고 교통안전표지 설치 시 혼동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직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명확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 기존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제시된 기준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세부 설치 방안을 제시한다.
- 또한 관련기관 담당자의 직무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며, 안전시설 설치·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 2.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조(안전표지)

-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 (2011년 12월)』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2012년 12월)』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2014년 7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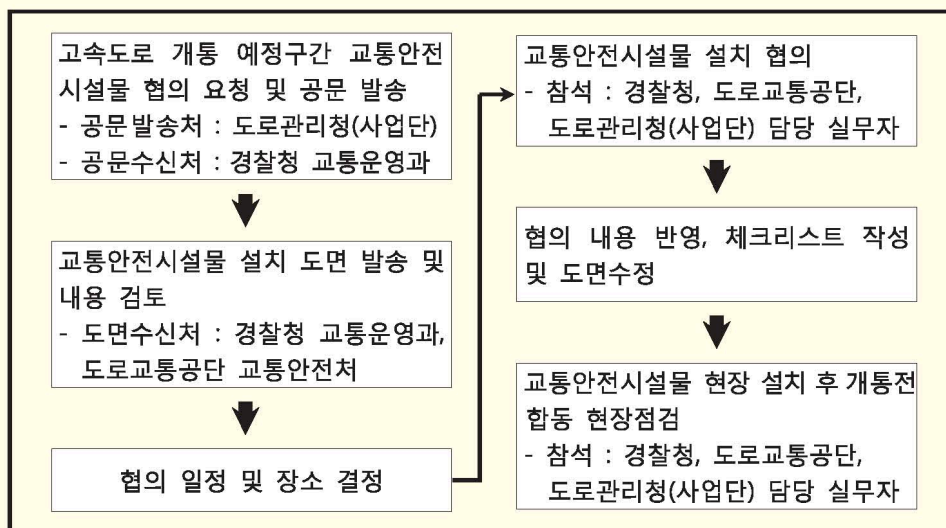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4년 2월 14일)』

### 3. 적용 범위

- 본 매뉴얼은 신설·확장 개통하는 고속도로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개통 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협의 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사업 주관기관은 본 매뉴얼의 내용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과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협의한다.
- 사업 주관기관은 경찰청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매뉴얼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설치될 수 있다.
- 적용 시점은 본 매뉴얼 제정 후, 교통안전표지 설치 협의 시부터 적용하며 매뉴얼 제정 이전에 협의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표지 설치의 통일성 차원에서 가급적 신속히 매뉴얼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 사업시행 주체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대상 고속도로 구간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본 기준을 적용한다.

### 4. 협의 순서

- 본 매뉴얼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협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제 2 장 주요내용

### 1. 교량 구간

#### 가. 기준

- 주의 표지 (138의 2 교량)
  - 교량이 있는 진입도로의 구간이 굽어 시인이 곤란한 경우, 길이가 긴 교량이 있는 경우, 그 외 운전자에게 교량구간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규제표지 (217 앞지르기 금지)
  -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시작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주의표지 (137 횡풍)
  - 횡풍이 불어 사고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주의표지 (126 미끄러운도로)
  - 속도를 내기 쉬운 도로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 조향 및 제동조작이 빈번한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기상조건으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나. 적용

- <그림 1>과 같이 교량이 존재 할 경우 시인성을 고려하여 설치가 필요한 지점에 주의표지를 설치하고 앞지르기 금지표지(217)를 해당구간 시점에 설치한다.
- 교량표지(138의 2)의 설치 대상은 중앙종거를 고려하여 시거불량 곡선부 ( $R < 910m$ (설계속도  $100km/h$ ))구간에 교량이 위치하는 경우 설치하거나, 교량의 연장이  $500m$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설치하되, 교량이름과 길이를 알리는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를 생략한다. 시거불량 곡선부의 곡선반경 기준은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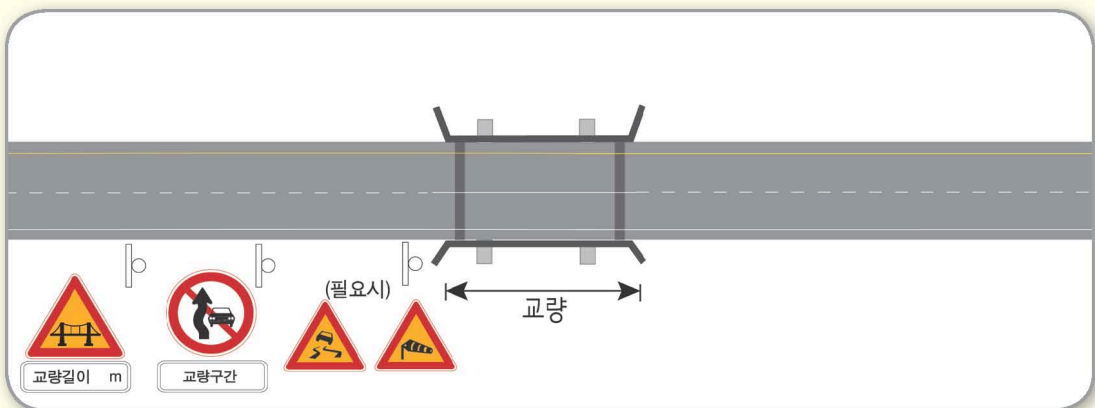
&lt;표 1&gt; 설계속도에 따른 곡선반경 기준

| 설계속도(km/h) | 100 | 110   | 120   |
|------------|-----|-------|-------|
| R(m)       | 910 | 1,290 | 1,7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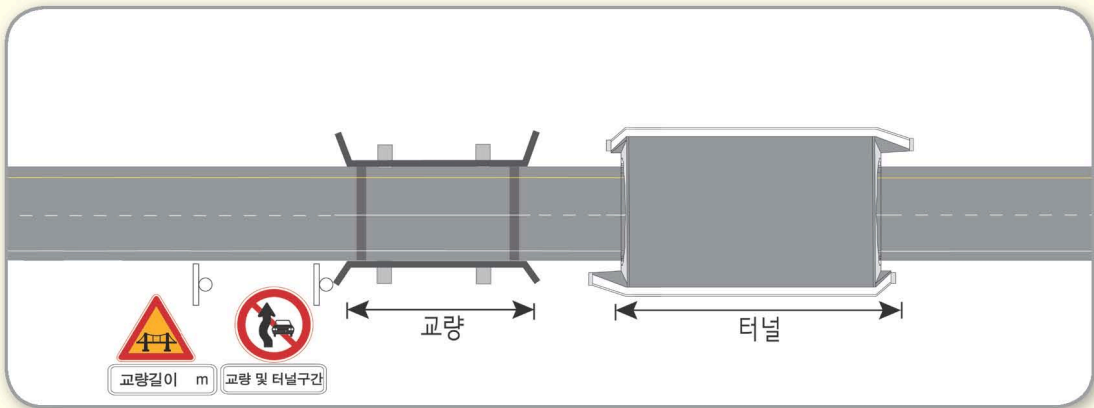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곡선부에서 시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 곡선반지름 계산값

- 교고 50m 이상 등 교량구간에 실제로 횡풍이 불어 주행 중인 차량이 횡풍으로 인해 차로이탈충돌사고 등을 유발할 우려가 높은 지점인 경우에는 횡풍표지를 설치한다.
- 내리막 커브구간에 위치하여 눈·비·서리 등으로 인한 수막현상이나 노면결빙 등의 우려가 있는 교량 전방에 미끄러운도로 표지(126)를 설치한다.
- 횡풍표지와 미끄러운도로 표지는 교량전방 100~200m지점에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사전 경각심을 제고한다.
- 앞지르기 금지(217) + 구역(403) 표지를 설치 할 때 보조표지 문안은 『교량구간』으로 하며, 교량과 터널이 반복되는 경우 교량이 먼저 위치할 때 『교량 및 터널 구간』, 터널이 먼저 위치 할 때 『터널 및 교량구간』으로 설치한다.

## 다. 설치 예시도



[그림 1] 교량구간



[그림 2] 교량 및 터널 구간

## 2. 터널 구간

### 가. 기준

#### ○ 주의 표지 (138 터널)

- 터널이 있는 진입도로의 구간이 좁어 시인이 곤란한 경우 주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 규제 표지 (224 최고속도제한, 225 최저속도제한)

- 자동차의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규제표지 (217 앞지르기 금지)

-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시작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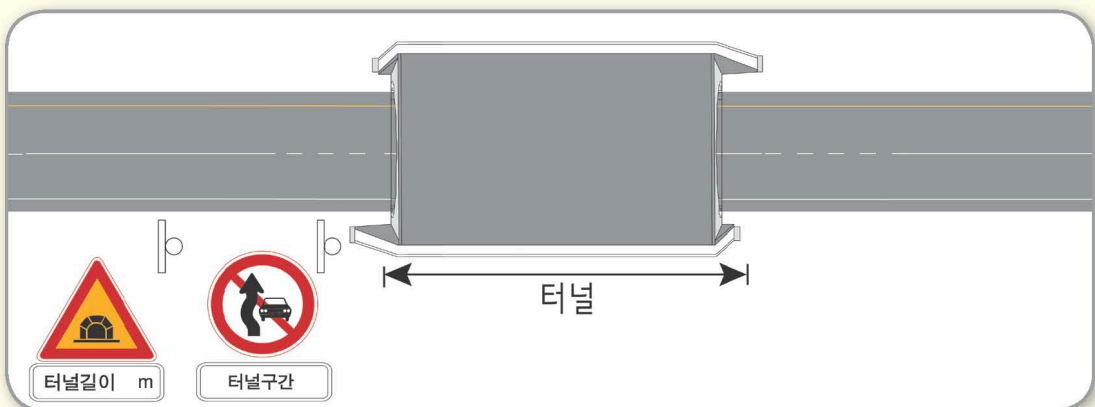
#### ○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장소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

일반기준 카.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위치를 따르며, 그 설치 기준 및 시험방법은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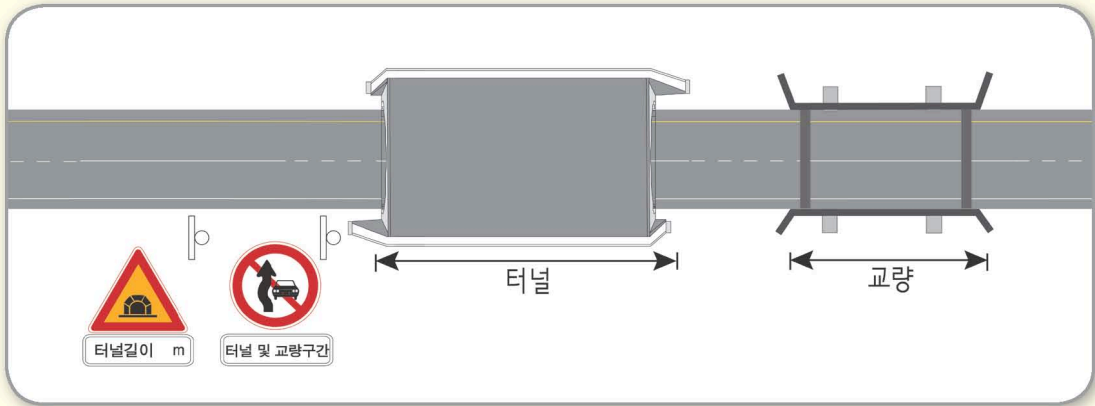
## 나. 적용

- 터널 진입부가 <표1> 설계속도에 따른 곡선반경보다 작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와 연장이 1km 이상인 터널이 존재하는 경우 터널 전방에 시인성을 고려하여 주의표지를 설치하고, 앞지르기 금지(217) 표지를 시설물 시점에 설치한다. 단, 터널을 안내하는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 설치를 생략한다.
- 장대터널(연장 1km이상) 내부에는 운전자들에게 규정 속도를 환기시키기 위해 조명식 또는 발광형 표지를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터널 진입 후 100~150m 지점에 설치하고, 2k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앞지르기 금지(217) + 구역(403) 표지를 설치 할 때 보조표지 문안은 『터널 구간』으로 하며, 교량과 터널이 반복되는 경우 교량이 먼저 위치할 때 『교량 및 터널구간』, 터널이 먼저 위치 할 때 『터널 및 교량구간』으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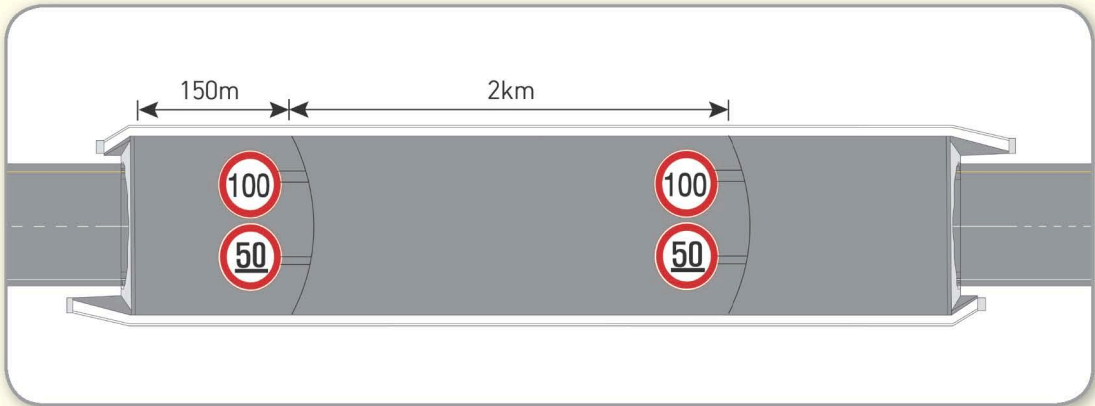
## 다. 설치 예시도



[그림 3] 터널 구간



[그림 4] 터널 및 교량구간



[그림 5] 터널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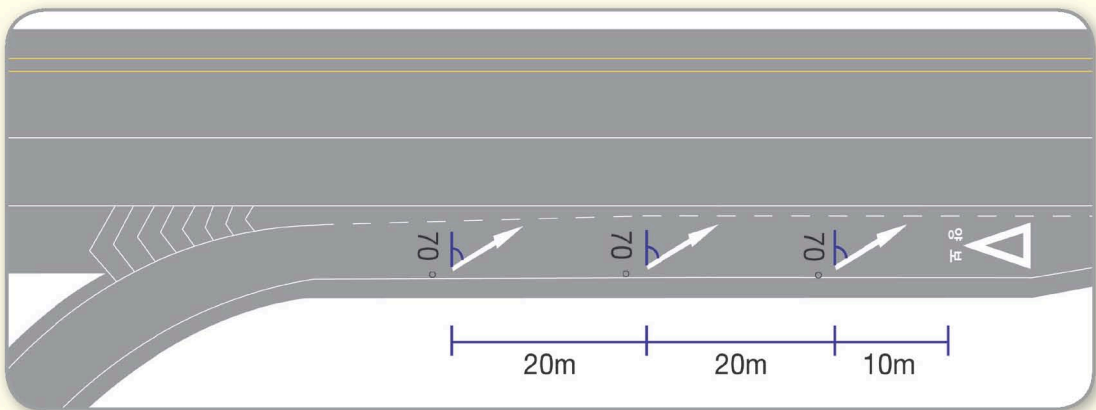
### 3. 본선 진입 구간

#### 가. 기준

- 주의 표지 (107 우합류도로)
  - 주도로에 우합류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분리되어 있던 도로가 합쳐지더라도 합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규제 표지 (213 우회전금지)



- 차량의 우회전을 금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규제 표지 (228 양보)
  - 차량이 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규제 표지 (522 양보)
  - 자동차가 양보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교차로나 회전 교차로, 합류부 도로 등에 설치한다.
  - 양보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 지시 표지 (543 차로변경)
  - 차로수 또는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그림 6] 차로변경 표지 세부 설치 방법

- 규제표지 (224 최고속도제한, 225 최저속도제한)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규제표지 (223 차간거리확보)
  -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도로의 구간 또는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 나. 적용

### (1) 본선 진입 전

- [그림 7]과 같이 본선 진입 노즈부의 0~50m 범위에 우회전금지표지(213)를 본선에 설치하며, 규제표지 이전 100m~150m 범위내에 우합류도로표지(107)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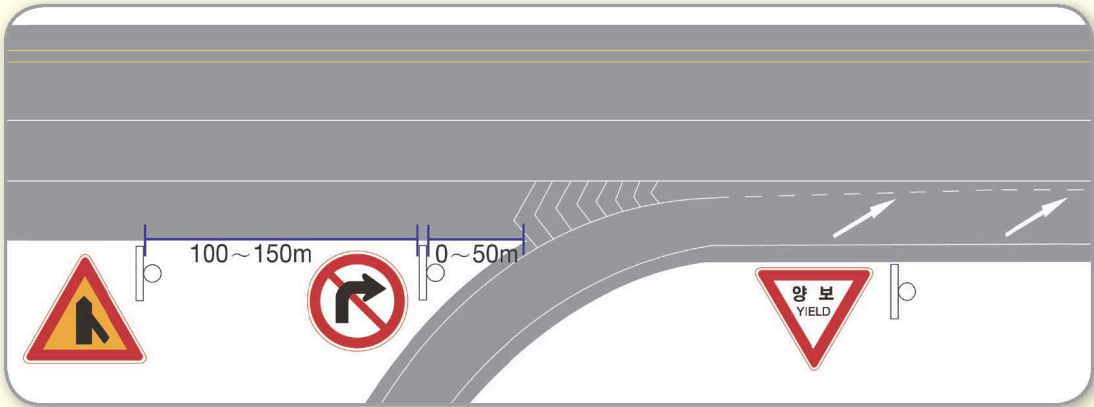
### (2) 본선 진입 시

- <그림 5>와 같이 가속차로 구간에 양보표지(228)를 실선이 끝나고 점선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 차로변경 표시(543)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설치개수를 정하며, 최소 3개 이상 설치한다.
- 양보표지(522)는 가속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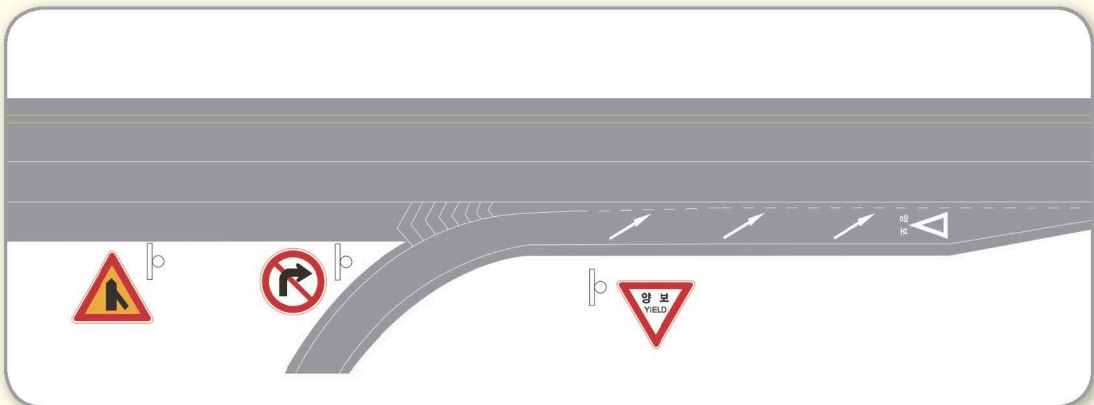
### (3) 본선 진입 후

- 최고속도제한표지(224) 및 최저속도제한표지(225)는 본선 합류 후 1km 지점에 설치하며, 내민식을 기본으로 한다.
- 차간거리확보(223) 표지는 속도제한 표지와 100m 이격하여 설치하며, 내민식을 기본으로 한다.
- 최고속도제한(224) 및 최저속도제한(225), 차간거리확보(223) 표지는 IC와 IC간의 간격이 클 경우 3~5km 간격으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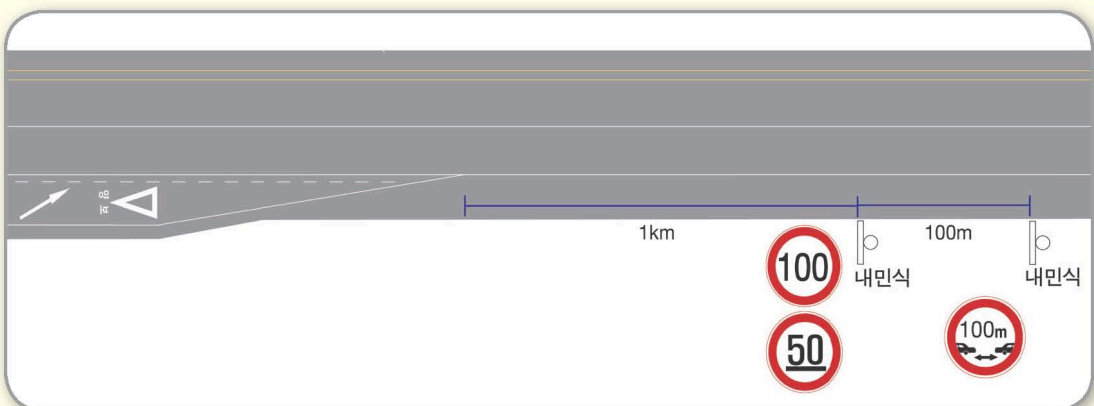
## 다. 설치 예시도



[그림 7] 본선 진입 전



[그림 8] 본선 진입 시



[그림 9] 본선 진입 후

## 4. 본선 진출 구간

### 가. 기준

- 지시 표지 (541 진행방향 및 방면)
  -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한다.
- 규제 표지 (224 최고속도제한)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조표지 (403 구역)
  - 본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해야 한다.

### 나. 적용

- 진행방향 및 방면표지(541)는 1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안내지명은 도로표지판 안내문안과 일치되게 선정하며, 2개 이내로 표시한다.
- 최고속도제한(224) 및 구역(403) 표지는 테이퍼가 끝나고, 감속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하며, 연결로에 1개소 추가 설치한다.
- 구역표지(403) 문안은 ‘램프구간’이라고 표기한다.

### 다. 설치 예시도



[그림 10] 본선구간에서 진출 시

## 5. 본선 곡선 구간

### 가. 기준

- 주의 표지 (111 우로굽은도로, 112 좌로굽은도로)
  - 우로 또는 좌로 굽은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 나. 적용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갈매기표지 적용 기준을 준용하여 <표2>의 최소 곡선반경 이하인 구간에 설치하며, 곡선부 시작지점으로부터 200m 전방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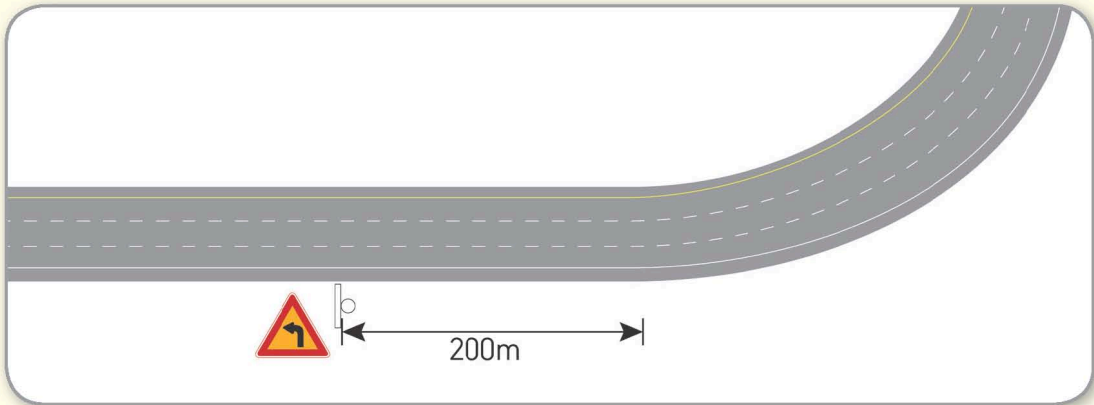
&lt;표 2&gt; 굽은도로 주의표지 설치기준

| 설계속도(km/h) | 곡선반경 | 비고 |
|------------|------|----|
| 120        | 770  |    |
| 110        | 650  |    |
| 100        | 550  |    |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갈매기표지 적용 최소곡선반경



## 다. 설치 예시도



[그림 11] 본선 곡선구간

## 6. 톨게이트 구간

### 6.1 본선 톨게이트 진입 전

#### 가. 기준

##### ○ 관련문서

- 경찰청 교통운영과-1463(2015.07.17) 『고속도로 교통안전표지 설치 방식 개선방안 하달(통보)』

##### ○ 규제표지 (224 최고속도제한)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규제표지 (226 서행)

-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 보조표지 (401 거리)

- 본표지로부터 위해요소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본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의 시작점, 구간 내 또는 끝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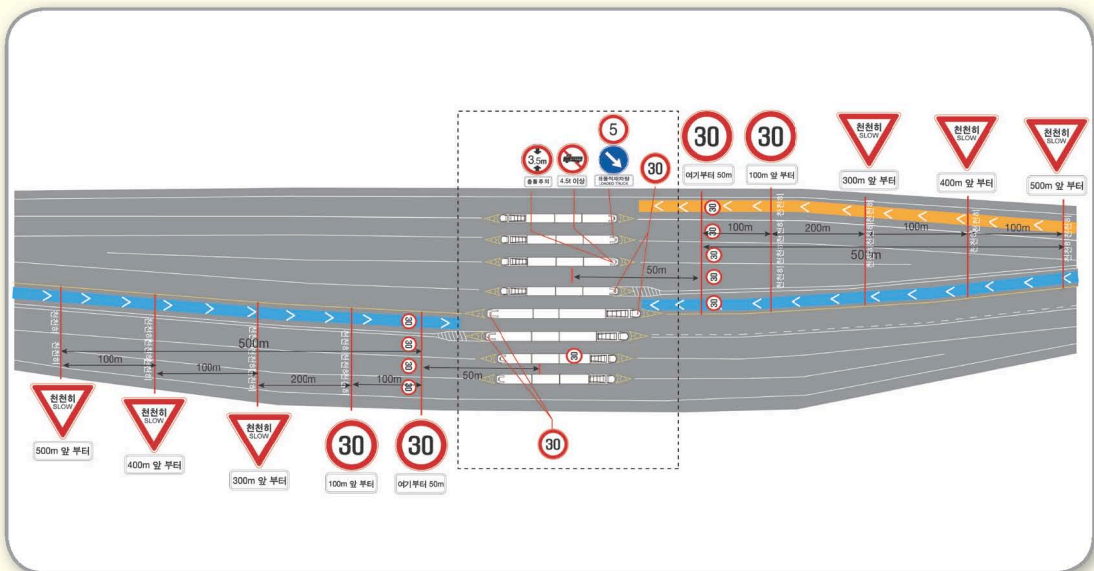
## 나. 적용

- 본선 요금소는 전방 50m부터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므로, 최고속도제한 표지와 거리 보조표지(402)를 설치하며, 서행표지(226)는 거리 보조표지(401)와 함께 3개소에 설치한다.

※“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 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조표지(401)의 문안은 ‘00m 앞부터’로 표기하며 간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다. 설치 예시도



[그림 12] 본선에서 톨게이트 진입 시

## 6.2 요금소 구간

### 가. 기준

#### ○ 관련문서

- 도로공사 교통처-4824(2010.11.26.) 『요금소 아일랜드 전면부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 ○ 규제표지 (224 최고속도제한)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규제표지 (518 속도제한)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교통안전표지(224)와 함께 설치한다.

#### ○ 규제표지 (221 차높이제한)

- 차높이 통행제한이 필요한 장소나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 규제표지 (203 화물자동차통행금지)

- 제한 차종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보조표지 (423 중량)

- 도로시설 또는 구조물의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지에서 중량의 제한, 보충, 설명 등이 필요한 곳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 보조표지 (414 차량한정)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규제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차의 종류를 한정할 때 설치한다.

## 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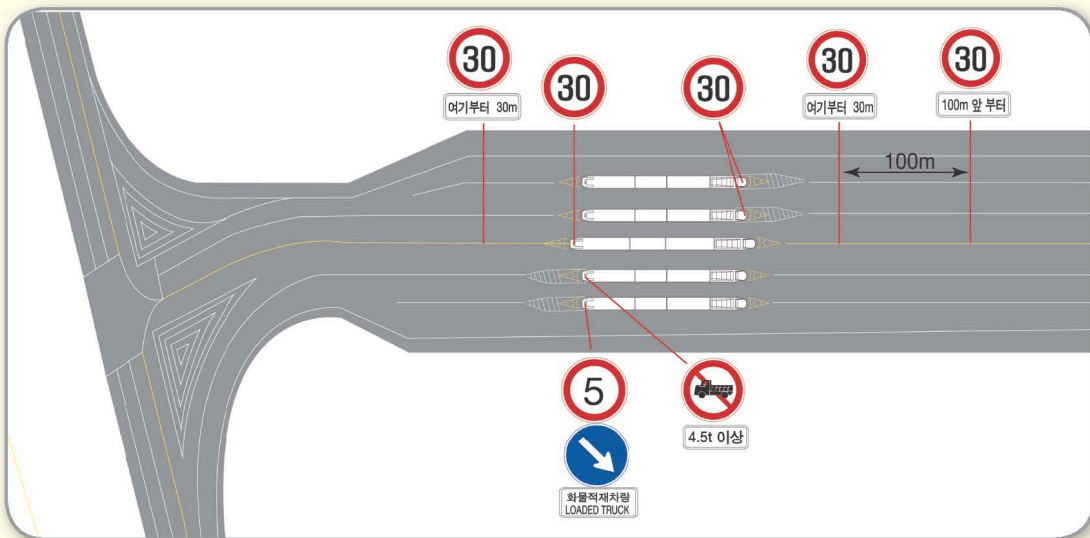
○ 차로 유형별 설치 방법은 [그림 13] 같다.



[그림 13] 차로 유형별 설치 예시

○ 규제표시(518 속도제한)는 하이패스차로와 일반차로 요금소 전방 30m에 설치한다.

## 다. 설치 예시도



[그림 14] 요금소 구간

## 6.3 국도에서 IC로 진입시

### 가. 기준

#### ○ 관련문서

- 한국도로공사 교통처-4824(2010.11.26.) 『요금소 아일랜드 전면부 교통안전 표지 설치기준』

#### ○ 규제표지 (224 최고속도제한)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규제표지 (226 서행)

-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 노면표시 (518 속도제한)

-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 서행표지 (226)와 함께 설치한다.

#### ○ 노면표시 (519 서행)

-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 서행표지 (226)와 함께 설치한다.

#### ○ 규제표지 (205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자전거 통행금지)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보조표지 (403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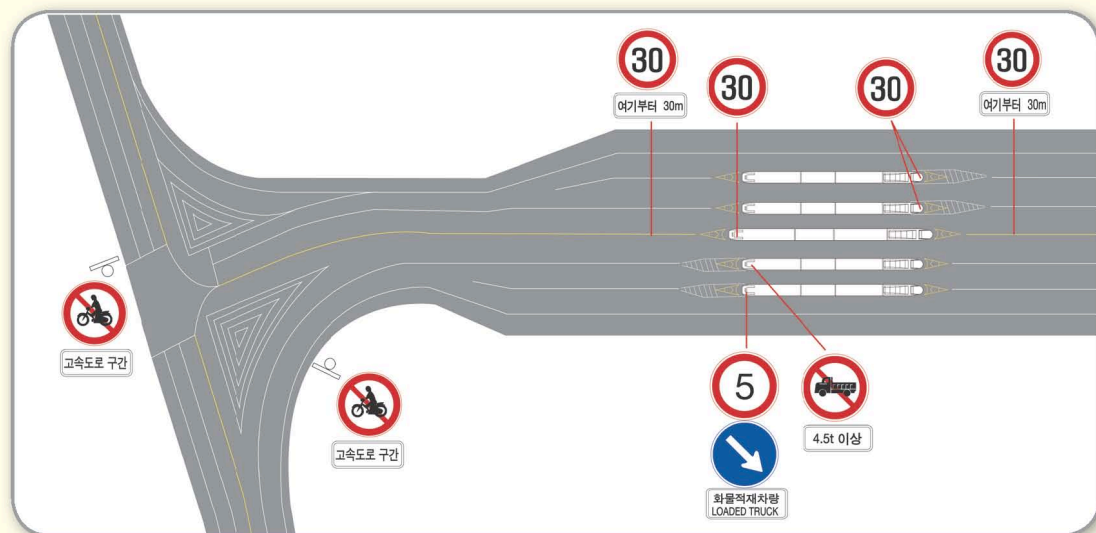
- 본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한다.



## 나. 적용

- 국도 접속부에서 고속도로 진입 시 톨게이트 진입 전 서행표지(226) + 서행표시(519) 병설한다.
- 서행표지(226)를 중복 설치할 경우, 노면 표시는 표지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 최고속도제한표지(224) + 보조표지(401,402,425) 설치 시 실제 속도제한이 필요한 지점 및 구간에 대해 보조표지 문안을 정하여 설치한다.  
(ex.00m 앞부터, 여기부터 00m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자동차 통행금지(205)+구역(403) 표지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구간 통행금지 차량에 대해 규제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표지(207)를 병설하여 설치한다.
- 경우에 따라 일반도로에까지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경찰서와 교통안전표지에 대하여 협의 후 설치한다.

## 다. 설치 예시도



[그림 15] 국도에서 IC 진입시

## 7. 휴게소 구간

### 가. 기준

#### ○ 관련문서

- 경찰청 교통운영과-938(2014.04.26.) 『고속도로 휴게소 속도제한 관련 시설 개선방안 하달(통보)』
- 경찰청 교통운영과-1463(2015.07.17) 『고속도로 교통안전표지 설치 방식 개선방안 하달(통보)』

#### ○ 규제표지 (224 최고속도제한)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주의표지 (129 과속방지턱)

- 과속방지턱이 설치 된 지점의 전방 30~200m에 설치해야 한다.

#### ○ 규제표지 (211 진입금지)

- 차량의 진입 또는 직진을 금지해야 할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 보조표지 (401, 402, 425 거리)

- 본표지로부터 위해요소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본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의 시작점, 구간 내 또는 끝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 보조표지 (403 구역)

- 본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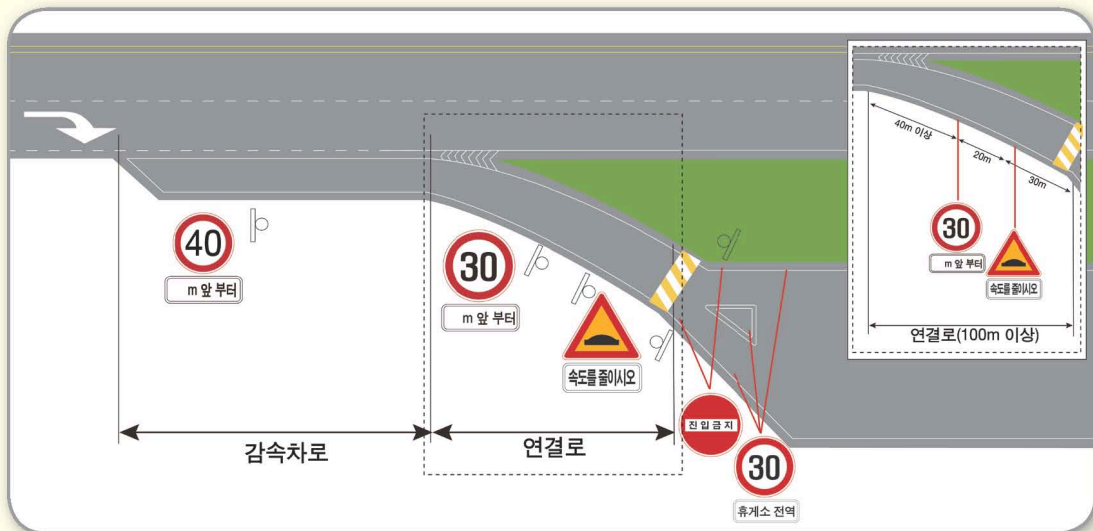
#### ○ 지시 표시 (541 진행방향 및 방면)

-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한다.

## 나. 적용

-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 전 지시표시(541)를 설치하여 휴게소 방면에 대해 미리 알린다.
- 휴게소 감속차로에 최고속도제한(224)+거리(401)(ex.000m 앞부터) 표지를 설치하여 연결로의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감속차로구간이 충분히 길면 연결로 시작 지점에 최고속도제한(224, 40km/h)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연결로 구간이 길 경우 휴게소의 제한속도를 표시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224, 30km/h)+거리(401)(ex.000m 앞부터) 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휴게소 광장부 시점에 최고속도제한(224, 30km/h) 및 구역(403)(휴게소 전역)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 휴게소 진입 연결로를 통해 본선에 역주행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게소 진입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입금지표지(211)를 경로별로 최소 두개 설치한다.

## 다. 설치 예시도



[그림 16] 휴게소 구간

## 8. 졸음쉼터 구간

### 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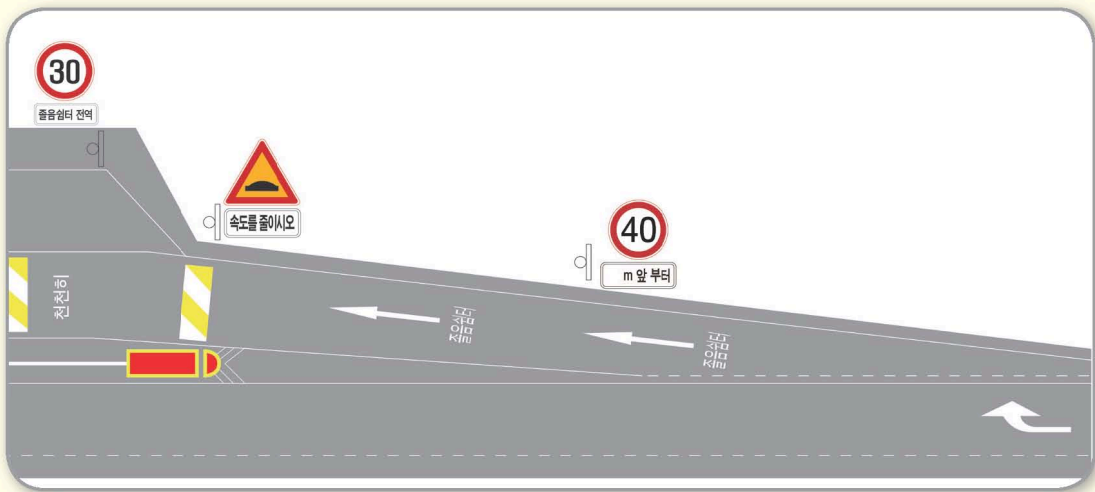
- 관련문서
  - 한국도로공사 교통처-4402(2014.10.17.) 『졸음쉼터 안전시설 강화방안』
- 규제표지 (224 최고속도제한)
  - 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규제표지 (211 진입금지)
  - 차량의 진입 또는 직진을 금지해야 할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보조표지 (401 거리, 403 구역)
  - 본표지로부터 위해요소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본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의 시작점, 구간 내 또는 끝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보조표지 (403 구역)
  - 본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 설치한다.
- 지시 표시 (540, 541 진행방향 및 방면)
  -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한다.

### 나. 적용

- 졸음쉼터 진입 전과 연결로에 진행방향 및 방면표시(541)를 설치한다.
- 졸음쉼터 감속차로에 최고속도제한(224)+거리(401)(ex.000m 앞부터) 표지를 설치하여 연결로의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감속차로구간이 충분히 길면 연결로 시작 구간에 최고속도제한(224)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연결로 구간이 길 경우 쉼터의 제한속도를 표시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224)+거리(401)(ex.000m 앞부터) 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졸음쉼터 광장부 시점에 최고속도제한(224, 30km/h) 및 구역(403)(졸음쉼터)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 다. 설치 예시도



[그림 17] 졸음쉼터 구간



## 부 록

### - 목 차 -

#### 1. 교통안전표지 점검 목록표(양식)

## 교통안전표지 점검 목록표(양식)

□ ○○○선 ○○~○○간 건설공사

| 당초설치계획(안) |                             |         | 점검내용 |                  | 점검결과 조정설치(안)                |         |
|-----------|-----------------------------|---------|------|------------------|-----------------------------|---------|
| 연번        | 위치(방향)                      | 시설물명    | 구분   | 사유               | 위치                          | 시설물명    |
| 1         | 본선STA 0+600                 | 139+415 |      |                  |                             |         |
| 2         | 본선STA 0+710 (대전)            | 228     | 이설   |                  | 본선STA 1+100 (대전)            | 228     |
| 3         | 본선STA 1+930 (서울)            | 228     | 이설   |                  | 본선STA 1+600 (서울)            | 228     |
| 4         | R-A 0+321 (좌측)              | 228     | 삭제   | 표지 중복            |                             |         |
| 5         | 시도11호선<br>STA 0+232.9 (호법)  | 228     |      |                  |                             |         |
| 6         | 본선STA 1+302.1 (대전)          | 107     |      |                  |                             |         |
| 7         | 본선STA 1+380.3 (서울)          | 107     |      |                  |                             |         |
| 8         | 본선STA 1+202.2 (대전)          | 213     |      |                  |                             |         |
| 9         | 본선STA 1+480.3 (서울)          | 213     |      |                  |                             |         |
| 10        | R-B 0+248 (우측)              | 226+415 | 삭제   | 서행 삭제            |                             |         |
| 11        | 시도11호선<br>STA 0+106.8 (원두리) | 226+415 |      |                  |                             |         |
| 12        | 시도11호선<br>STA 0+195.9 (호법)  | 226+415 |      |                  |                             |         |
| 13        | R-D 0+210.2 (우측)            | 224+402 | 문안수정 | 여기부터<br>→ 램프구간   | R-D 0+210.2 (우측)            | 224+403 |
| 14        | R-C 0+500                   | 221     | 삭제   | 4.5m 이상<br>삭제    |                             |         |
| 15        | 시도11호선<br>STA 0+066.5 (원두리) | 205+301 | 표지변경 | 301 삭제<br>403 추가 | 시도11호선<br>STA 0+066.5 (원두리) | 205+403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참여 집필진

## - 경찰청 -

|             |        |
|-------------|--------|
| 조 우 현 ..... | 교통운영계장 |
| 이 종 학 ..... | 경 감    |
| 손 지 욱 ..... | 경 위    |

## - 도로교통공단 -

|             |        |
|-------------|--------|
| 홍 종 순 ..... | 교통안전처장 |
| 유 승 종 ..... | 과 장    |

## - 한국도로공사 -

|             |        |
|-------------|--------|
| 유 병 철 ..... | 첨단교통팀장 |
| 김 진 홍 ..... | 교통개선부장 |
| 최 명 호 ..... | 교통시설차장 |
| 정 세 준 ..... | 교통시설대리 |

### 고속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매뉴얼

---

발 행 일 : 2016년 1월

발 행 처 : 경 찰 청 02-3150-0611

도로교통공단 033-749-5207

한국도로공사 054-811-2626

인 쇄 처 : 나눔인쇄소 054-811-1071

---

본 매뉴얼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상기 발행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